

# 생명을 위하여

발행일 2020년 11월 5일 (통권 23호)  
발행인 염수정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전화 02-727-2350~4 팩스 02-727-2355 이메일 vitavia@hanmail.net  
홈페이지 www.forlife.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vitavia\_seoul  
디자인 썬더셀

2020  
11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가톨릭 교회는 ‘차별 금지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두 번째 이야기>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차별 금지법안에서 ‘성별’의 정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안의 다른 조항들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되는 한 사례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미국의 오래된 주에서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가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에 동성 커플의 결혼 축하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부당한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지방 법원에서 무려 1억 6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해도 단지 그들에게 양심상의 이유로 협력하지 않으면 차별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 금지법안은 그러한 그들의 신념은 보호하면서도 제과점 부부의 경우와 같은 종교적 신념은 오히려 탄압을 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 금지법안의 내용 가운데는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들을 언급하면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교회가 단지 남자와 여자의 사랑,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교육 현장에서도 남녀의 성과 사랑, 소위 이성애적 성과 사랑만 이야기한다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학교는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의 다양성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무조건 가르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차별 금지법은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발을 한다면, 고발당한 사람은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법이 이렇게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의 따른 행위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모상인 그들의 존엄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존엄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치들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별 금지법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